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1284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상고인

[Redacted]

[Redacted]

송달장소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39288 판결

판 결 선 고

2003. 6. 27.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40,000,000원에 대한 2000. 12. 1. 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9. 12. 9. [redacted] 소재 [redacted] 의원에서 좌측 유방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redacted] 부속 [redacted] 병원에 진료의뢰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1. 21. [redacted] 소재 [redacted] 산부인과 의원에서 좌측 유방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유방초음파검사상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redacted] 소재 [redacted]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유방단순촬영 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0. 4. 25. 피고의 영업직원 [redacted] 과 사이에 전화를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redacted] 이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열, 통증, 약물중독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심장병, 혈관계 질환, 호흡계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폐양, 위장 질환, 신장병, 당뇨병, 간장질환, 정신질환, 에이즈와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의사의 진료,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현재 팔, 다리에 마비 또는 절단된 부위가 있거나 눈, 귀, 코, 언어, 씹는 기능, 척추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모두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 산부인과 의원 및 ■■■ 산부인과 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11. 20. ■■■ 대학교 부속 ■■■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0.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11.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 산부인과 의원과 ■■■ 산부인과 의원에서의 유방종괴 진단을 거쳐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 종합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여기서 유방실질불투과성이란 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보통 사람의 경우와 차이가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것은 특이 소견이 없을 때 1년의 간격을 두고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최종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

고가 [] 종합병원의 진단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화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원고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의 직원 []도 원고에게 '암'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 '유방종괴'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전력의 유무는 묻지 않고, 다만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라고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과거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


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 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보험금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 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1. 3.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 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 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 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금원인 금 40,000,000원에 대한 2000.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2003. 6. 1.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 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 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 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고 현 철 

대법관

변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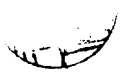
변 재 승 

주 심

대법관

윤재식

윤재식



대법관

강신욱

강신욱

